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5,202,863	10,956,086
일반회계	327,932,923	9,837,988
특별회계	37,269,940	1,118,098
공기업특별회계	31,295,642	938,869
상수도공기업	15,761,549	472,846
하수도공기업	15,534,093	466,023
기타특별회계	5,974,298	179,229
주택사업	1,302,483	39,074
의료급여기금운영	1,364,241	40,927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69,467	14,084
공영개발사업	408,403	12,252
장기미집행	683,573	20,507
농공지구조성사업	441,664	13,250
기반시설	121,423	3,643
수질개선	1,148,643	34,4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4,401	1,0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별첨)"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29,51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7 조 제3회 추경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 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한다.